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본문중 '회장은 도지사가 된다' 를 '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' 로 하고
동조 제3항 본문중 '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' 을 '기획관리실장, 보건환경국장' 으로
한다.

제3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'행정부지사가' 를 '기획관리실장이'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